

2023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전주온빛중학교

전주온빛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여 학생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제2조 (준거) 본 규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23 전라북도 주요 업무 계획(전북교육 2023-001)
- 2023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 2023 중학교 학교생활기록 기재 요령
- 교육부 훈령 제433호 (2023.3.1.)

제3조 (방침)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생활기록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별도 공문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과목별 학기 단위 성적 총점의 40% 이상으로 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밀착 평가를 실시한다.
- * 교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지필평가의 횟수는 학기당 2회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인 과목
 - 시수가 적은 과목(1단위)
-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9.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친인척)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소규모 학교 등)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0.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별지9]을 참조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고 학기 초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11. 성적관리의 부적정 사례 및 비교유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수 및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에 노력한다.
12. 학업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제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가.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 다. 위원은 교무운영부장, 교육연구부장,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담당교사(2,3학년), 평가총괄 담당교사로 구성하며 '3'항 심의 내용 업무 담당 교사와 함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구 분	담 당	역 할
위원장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사항의 결재자 • 학업성적관리 책임자
부위원장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보좌 및 유고 시 대행
위원	교무운영부장 교육연구부장 생기부정정(2,3학년) 평가총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업무에 대해 심의 • 심의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위원수	총 7명	

라. 생활기록부 정정대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년 생활기록부 업무 담당 교사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가. 교육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 나.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상시 운영한다.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관련자료 및 회의록 스캔하여 첨부)를 얻은 후 시행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나.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 다. 성적처리 시 지필·수행평가를 마감한 후 지필·수행평가 정정에 관한 사항
 - 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마.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 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아.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 이외의 세부사항 심의(가산점부여 항목 예, 기준, 가산점 부여 대상자 심의 결정 등)
 - 자. 자유학기 및 연계학기의 활동평가 기준 및 방법
 - 차.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5조 (교과협의회)

- 1. 교과협의회는 교과(군)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중국어·한문)
- 2. 교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 나.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확정
 - 다.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문항 유무 상호 점검
 - 라.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마. 기타 교과 관련 업무
- 3. 교과협의회는 상시 운영(학기당 2회 이상)하고 협의록을 비치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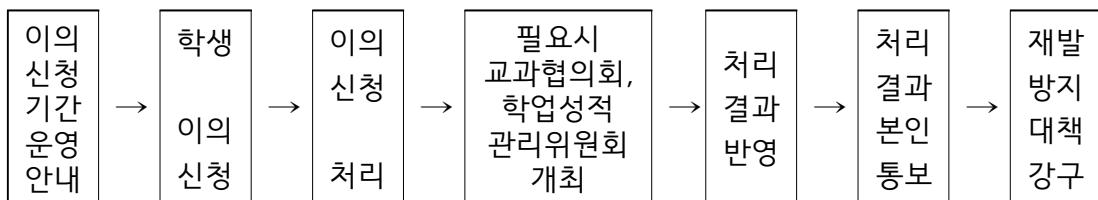
제6조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 1.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2.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 3.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시기·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

과의 활용 등은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5.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상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6.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유의사항 등 평가 전반 내용에 대하여 교직원간에 충분히 논의한다.
※ 중학교 3학년 2학기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기준일 이전까지 입력 마감한다.
7. 지필평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의 양식과 작성 방법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치시켜 안내하고, 결재과정에서 확인하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한다.
8.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성적처리를 위하여 시험결과 공개 후 3일 이내로 한다.

※ 이의신청 처리 절차



9.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 (지필평가 문항 출제)

1.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사항(출제범위, 시험시간, 공동출제, 공동채점,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으로 남긴다. 또한 출제 및 고사기간 중에는 교무실 등을 학생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2.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별지2, 별지3 참조**]
3. 평가문제는 타당도 . 신뢰도 .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교사별로 문항수를 분담하여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일 학년.교과를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때에는 담당 교사 간 협의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4.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는 상 20%내외, 중 50%내외, 하 30%내외로 적정하게 배열한다. 또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 (소수점 배점 등)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5. 모든 출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시판되는 참고서(자습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 나.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일
 - 다. 추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라.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마. 고사원안 출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
 - 바. 사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유인물로 배부하거나 가르쳐 주고 출제하는 일
 - 사. 학내 전산망 및 개인용 컴퓨터의 보안 관리(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의 파일에 대한 암호설정)를 소홀히 하여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
6. **지필평가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하며, 서답형은 총 배점의 30% 이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 * 서답형: 기존의 주관식 문제를 말하고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등이 있음**
7. 서술(논술)형 문항은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경우 지필평가 총 배점의 20% 이상, 도덕 교과는 지필평가 총 배점의 10% 이상 출제해야하며,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 다만, 지필평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배점은 학기당 과목별 총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필평가에서는 서답형(단답형, 완성형)의 비율을 고사별 총 배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때 채점 기준표(답안, 유사답안, 부분점수 등 점수 부여 방법 등)를 완전하게 갖추어 정확한 채점이 되도록 한다.
- * 학기단위 지필평가에서 서술(논술)형 배점은 총 배점의 20%(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예) 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2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20%
- 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1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30%
- 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40%
8. 서답형 문제는 문항정보표에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시하되,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고 부분점수 부여에 유념한다.
9. 정기고사 원안, 문항정보표, 서답형 정답표(채점기준표) 양식은 평가총괄 담당자가 고사 전 운영 계획 수립 시 기안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통일하여 사용한다. 문항정보표에는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혹은 성취기준 번호),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10. 과목별로 제출한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은 평가담당교사, 평가담당부장, 교감 등이 철저하게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교사에게 통보하고 수정·제출하도록 한다.

제8조 (각 교과의 평가영역별 배점 및 비율)

1. 수행평가 영역의 “태도” 평가는 개별 항목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평가영역 항목의 소항목에 포함시켜 평가할 수는 있다.
 2.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 ($100\% = \text{지필평가 반영비율} + \text{수행평가 반영비율}$)
- * 과목별 수행평가의 기본점수는 평가영역별 영역만점의 10~40%를 권장함.

④ 국어과

1) 1학년

과 목 명		국어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듣기·말하기	쓰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30%		30%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1주		6월 4주		3월~6월			
	2학기	자유학기제로 지필평가 실시하지 않음.				자유학기제로 학습 과정을 수시로 평가 하여 학생의 특성을 성취기준에 맞추어 문장으로 서술함.			
		성적 산출하지 않음. 평가 결과 처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재.							

2) 2학년

과 목 명		국어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1학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30%		30%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1주		6월 4주		3월~6월	8월~12월
	2학기	9월 4주		11월 4주			

3) 3학년

과 목 명	국어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1학기		2학기		수업 밀착 형 평 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 형	서답형 (서술형)	쓰기	문법	쓰기	말하 기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20점	10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30%		30%		20%	10%	10%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2점	2점	4점	2점	2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1주		6월 4주		3월~6월	8월~1 2월	8월~12월		3월~7 월
	2학기	9월 4주		11월 4주						

▣ 도덕과

1) 1학년 1학기

과 목 명		도덕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포트폴리오 (활동지, 교과서 활동하기)	수업 역량 평가 (준비, 참여도, 활동 수행 능력)
		선택 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 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1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10점(이상))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30%		30%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중		6월 중		3월~7월	3월~7월
평가 내용 (성취 기준)	1학기	9도01-01, 9도01-02, 9도01-03, 9도01-04, 9도01-05					

나) 2학기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로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정 중심평가 100%로 실시한다.
- 수행평가로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 활동 준비 및 참여도, 활동 내역 등을 서술식으로 기록한다.

2) 2학년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배움 정리 평가	생각 키움 평가	수업 역량 평가 (준비, 참여도, 활동 수행 능력)			
		선택 형 (서술형)	선택 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1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10점(이상))	20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30%		3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중		6월 중		3월~7월	3월~7월		
	2학기	9월 중		11월 중		9월~12 월	9월~12월		
평가 내용 (성취 기준)	1학기	9도03-01, 9도03-02, 9도03-03, 9도02-05, 9도02-06, 9도02-07							
	2학기	9도03-04, 9도03-05, 9도03-06, 9도03-07, 9도04-01, 9도04-02 9도04-03, 9도-04-04							

❷ 사회과

1) 1학년

가) 1학기

과 목 명	사회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고사(25%)		2차고사(25%)		색다른 문화 보고서	자연재 해 포스터 제작	학습지 포트폴리오	수업 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학습준비 수업 참여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10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17.5% (이하)	7.5%(이상) (5%(이상))	17.5% (이하)	7.5%(이상) (5%(이상))	10%	1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4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중		6월 중		5월 중	6월 중	3월~7월
								3월~7월

나) 2학기

자유학기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필평가 실시하지 않음. · 과정중심평가 100% 실시 · 지식 위주의 평가가 아닌 인지적·정의적 영역 평가 실시 · 형성평가, 발표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의 수행평가를 활용하여 평가함. · 평가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재함. 								

2) 2학년 역사

가) 1학기

과 목 명		역사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연표 만들기	학습지 포트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5점	15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6%(이상))	21% (이하)	9%(이상) (6%(이상))	15%	15%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6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중		6월 중		5월~6월	3월~7월
						3월~7월	

나) 2학기

과 목 명		역사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카드뉴스 제작	학습지 포트폴리오
		선택 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 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5점	15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6%(이상))	21% (이하)	9%(이상) (6%(이상))	15%	15%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6점	4점
평가 시기	2학기	9월 중		12월 중		10월~11월	8월~11월
						8월~11월	

3) 3학년 역사

가) 1학기

과 목 명	역사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학습노트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6%(이상))	21% (이하)	9%(이상) (6%(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중		6월 중		3월~7월	6월 중

나) 2학기

과 목 명	역사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학습노트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6%(이상))	21% (이하)	9%(이상) (6%(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 시기	2학기 9월 중		11월 중		8월~11월	11월 중

4) 3학년 사회

과 목 명	사회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수업 밀착형 평가 (학습준비)	포트 폴리오		
	선택 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 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5점	15점	
세부 반영비율	21%	9%	21%	9%	10%	15%	15%	
기본점수	0점		0점		4점	6점	6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중		6월 중		3월~7월	5-6월	4-5월
	2학기	9월 중		11월 중		8월~11월	10-11월	9-10월

▣ 수학과

1) 1학년

가) 1학기

과 목 명	수학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문제해결력	수학적 의사소통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6%(이상))	21% (이하)	9%(이상) (6%(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중		6월 중	3월~7월	3월~7월	
	2학기	10월 중		12월 중	8월~12월	8월~12월	

나) 2학기

과 목 명	수학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평가 시기	2학기	자유학기제로 지필평가 실시하지 않음.			자유학기제로 학습과정을 수시로 평가하여 학생의 특성을 성취기준에 맞추어 문장으로 서술함.	

* 성적 산출하지 않음. 평가 결과 처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재

2) 2,3학년

과 목 명	수학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문제해결력	수학적 의사소통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6%(이상))	21% (이하)	9%(이상) (6%(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중		6월 중		3월~7월	3월~7월
	2학기	10월 중		12월 중 (3학년 11월 중)		8월~12월	8월~12월

④ 과학과

1) 1학년

과 목 명		과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과학예술 융합평가	탐구 능력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30%		30%		10%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중		6월 중		3~4월 중	5~6월 중	3월~7월 중
	2학기	자유학기제로 지필평가 실시하지 않음.				8월~12월 중		

2) 2학년

과 목 명		과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과학예술 융합평가	탐구 능력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30%		30%		10%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 중		6월 중		5~6월 중	4~5월 중	3월~7월 중
	2학기	9월 중		12월 중		9~10월 중	10~11월 중	8월~12월 중

3) 3학년

과 목 명		과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과학예술 융합평가	자유탐구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30%		30%		10%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5월중		6~7월중		4~6월중	4~6월 중	3~7월중
	2학기	10월중		12월중		9~11월중	9~11월 중	8~12월중

▣ 기술·가정과

1) 1학년

가) 1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30%)		실험실습	주제탐구	포트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해당없음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3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해당없음		21% (이하)	9% (이상)	20%	30%	20%
기본점수	해당없음		0점		4점	6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해당없음		6~7월 중	4월~6월	4월~6월	4월~6월
	2학기	해당없음					

나) 2학기

-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성장중심평가를 실시하며,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활동 내용, 학생의 성장 변화 등을 학교 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서술식으로 기재하며, 평가계획은 2023년 자유학기제 평가계획을 따른다.

3) 2, 3학년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30%)		실험실습	주제탐구1	주제탐구2	포트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해당없음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20점	15점	15점
세부 반영비율	해당없음		21% (이하)	9% (이상)	20%	20%	15%	15%
기본점수	해당없음		0점		4점	4점	3점	3점
평가 시기	1학기	해당없음		6~7월 중	4월~ 6월	4월~ 6월	4월~ 6월	
	2학기	해당없음		11~12월 중	9월~ 11월	9월~ 11월	9월~ 11월	

④ 정보·컴퓨터과

1) 3학년

과목명	정 보		
평가방법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주제탐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영역만점	30점	30점	40점
반영비율	30%	30%	40%
기본점수	12점	12점	16점
평가 시기	1학기	4-5월	6월
	2학기	9-10월	10월-11월
			3월-7월
			8월-12월

④ 체육과

1) 1학년

과 목 명	체육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건강체력	기능		감상 보고서	
				네트형 경쟁활동	여가 스포츠 안전		
영역만점			15점	25점	25점	20점	15점
세부 반영비율			15%	25%	25%	20%	15%
기본점수			6점	10점	10점	8점	6점
평가 시기	1학기		3월	5월	6월	6월	3월~7월

*2학기 평가는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별도로 진행 (수시평가)

2) 2학년

과 목 명	체육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건강체력	기능		감상 보고서		
				기록 도전활동	네트형 경쟁활동	영역형 경쟁활동		
영역만점			15점	15점	20점	15점	20점	15점
세부 반영비율			15%	15%	20%	15%	20%	15%
기본점수			6점	6점	8점	6점	8점	6점
평가 시기	1학기		3월	5월	5월	6월	6월	3월~7월
	2학기		9월	9월	10월	11월	11월	8월~12월

3) 3학년

가) 1학기

과 목 명		체육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건강체력		기능		감상 보고서	역량 평가
				스포츠 표현	기록 도전		
영역만점				15점	25점	25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15%	25%	25%	20%
기본점수				6점	10점	10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3월	5월	6월	3월~7월

나) 2학기

과 목 명		체육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여가 스포츠 안전		기능		감상 보고서	역량 평가
				영역형 경쟁활동	네트형 경쟁활동		
영역만점				15점	25점	25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15%	25%	25%	20%
기본점수				6점	10점	10점	8점
평가 시기	2학기			9월	10월	11월	12월

④ 음악과

1) 1학년

가) 1학기

학년	1학년 (1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	감상	생활화
	가창	① 감상 지필 평가 ② 감상 소감문 작성	연주회 관람 및 감상 보고서 작성
영역만점	40점	40점	20점
기본점수	16점	16점	8점
반영비율	40%	40%	20%
평가시기	3월 ~ 4월	5월	6월 중

나) 2학기

자유학기제	학기 중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태도 등을 학생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서술식으로 입력함.

2) 2학년

가) 1학기

학년	2학년 (1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	감상	생활화
	가창	① 실음 평가 ② 주제 논술	① 포트폴리오 ② 명함 만들기
영역만점	40점	40점	20점
기본점수	16점	16점	8점
반영비율	40%	40%	20%
평가시기	5월 중	4월 ~ 5월	① 6월 중 ② 3월 중

나) 2학기

학년	2학년 (2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	감상	생활화
	기악	① 실음 평가 ② 주제 논술	연주회 관람 및 감상 보고서 작성
영역만점	40점	40점	20점
기본점수	16점	16점	8점
반영비율	40%	40%	20%
평가시기	8월 중	9월 ~ 10월 중	11월 초

3) 3학년

가) 1학기

학년	3학년 (1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	감상	생활화
	가창	① 감상지필 평가 ② 실음 평가	연주회 관람 및 감상 보고서 작성
영역만점	40점	40점	20점
기본점수	16점	16점	8점
반영비율	40%	40%	20%
평가시기	3월	4월 ~ 5월 중	6월

나) 2학기

학년	3학년 (2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	감상	생활화
	기악	① 감상지필 평가 ② 실음 평가	연주회 관람 및 감상 보고서 작성
영역만점	40점	40점	20점
기본점수	16점	16점	8점
반영비율	40%	40%	20%
평가시기	8월 말	9월 초~ 11월 초	11월 중

❷ 미술과

1) 1학년

가) 1학기

학년	1학년(1학기)		
평가방법	수 행		
평가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1	표현2	감상
만점	30점	40점	30점
기본점수	12	16	12
반영비율	30%	40%	30%
평가시기	3~4월	4~6월	6~7월

나) 2학기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학생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함.

2) 2학년

학년	1학기			2학기		
	평가방법	수 행		평가방법	수 행	
평가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1	표현2	감상	표현1	표현2	감상
만점	30점	40점	30점	30점	40점	30점
기본점수	12	16	12	12	16	12
반영비율	30%	40%	30%	30%	40%	30%
평가시기	3~4월	4~6월	6~7월	8~9월	9~10월	9~11월

3) 3학년

학년	3학년(1학기)			3학년(2학기)		
평가방법	수 행			수 행		
평가비율	100%			100%		
평가영역	표현	체험	감상	표현	체험	감상
만점	40점	30점	30점	40점	30점	30점
기본점수	16	12	12	16	12	12
반영비율	40%	30%	30%	40%	30%	30%
평가시기	3~4월	5~6월	6월	8~9월	9~10월	11월

❷ 영어과

1) 1학년

가) 1학기

학 기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듣기	Writing	Speaking	역량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21%이하	9%이상	10%	1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4점	4점
평가시기	5월 중		6월 중		4월	3~7월 중	3~7월 중	3~7월

나) 2학기(자유학기)

단원명	교수·학습 방법	주요 내용 (중점 활동)	과정 평가
Lesson 5. Wonderful World of Animals	모둠학습 개별학습	그림 묘사하기	개인평가
		공생 관계 동물 조사하여 발표하기	
Lesson 6. Let's have fun at school	모둠학습	좋아하는 것 묻고 답하기	개인 평가
	협동학습	축제 포스터 만들기 영어 표지판 만들기	상호평가 작품 내용 평가
Lesson 7. Art around us	모둠학습	원하는 것 묻고 답하기	상호평가
	협동학습	축제 부스 경험담 쓰고 발표하기 예술직업 조사 후 발표하기	상호평가 작품 내용 평가
Lesson 8. My good friends	모둠학습	고민-충고 답하기	개인 평가
	탐구학습	추억 사진 묘사 글쓰기	작품 내용 평가

2) 2,3학년

학 기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듣기	Writing	Speaking	역량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21%이하	9%이상	10%	1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4점	4점		
평가시기	5월 중		6월 중		4월	3~7월 중	3~7월 중	3~7월		
학 기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듣기	Writing	Speaking	역량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21%이하	9%이상	10%	1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4점	4점		
평가시기	9월 중		11-12월 중		9월	8~12월 중	8~12월 중	3~7월		

❷ 한문과

1) 1학년

가) 1학기

과 목 명		한 문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포트 폴리오	창의한자 만들기	나의 명함 만들기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3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30%	20%	20%
기본점수	0점		12점	8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6월 - 7월		3월~7월	5월
				6월	

나) 2학기(자유학기)

평가 방법		수행평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실시로 인하여 지필평가 실시하지 않음. -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활동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성취기준에 의해 문장으로 서술하여 기재함.

2) 2학년

가) 1학기

과 목 명	한문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포트 폴리오	만화로 그려보는 사자성어	구술평가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3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30%	20%	20%
기본점수	0점		12점	8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6월 - 7월		3월~7월	4월
					6월

나) 2학기

과 목 명	한문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포트 폴리오	호짓고 낙관 만들기	구술평가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3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30%	20%	20%
기본점수	0점		12점	8점	8점
평가 시기	2학기	12월		3월~7월	10월
					12월

② 중국어과

1) 1학년

구 분	지필평가		수행평가			
평가방법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반영비율	30%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정중심평가 100% 실시 한어병음 읽기, 숫자 말하기, 기본 어휘 등 지적 영역 평가 실시 발표 또는 수업 참여도와 같은
평가영역	2차고사(30%)		문화	말하 기	쓰기	포트 폴리 오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15점	15점	15점	25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15%	15%	15%	25%
기본점수	0점		6점	6점	6점	10점
평가시기	6월 중		수시			

2) 2학년

과 목 명	중국어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읽기· 쓰기	말하기·쓰기	문화
	70점 (이하)	30점 (이상)				포트 폴리오
영역만점	21% (이하)	9% (이상)	20%	20%	20%	10%
세부 반영비율	0점	8점	8점	8점	4점	8점
기본점수	6월 중		3~5월	4~5월	5~6월	수시
평가 시기	1학기	11월 중		3월~5월	4월~5월	5월~6월
	2학기	12월 중		8월~10월	10월~11월	11월~12월
						8월~12 월

제9조 (지필고사 관리)

1. 평가문제 인쇄 및 관리

- 가. 과목 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친 후 각 학년 평가 담당교사가 인쇄를 의뢰한다.
- 나. 평가담당 부장교사와 담당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등의 전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다. 학교장은 정기고사 일정 발표 후부터 정기고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출제장소,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철저한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 평가관리실 담당자(교감 선생님), 보안 담당자(연구 부장, 평가 담당교사) 및 인쇄관리 담당자(행정실 시설물관리 주무관, 학년 평가담당 교사)를 지정한다.
보안 담당자는 특히 인쇄관리 담당자는 평가대상 학생의 부모 및 친·인척이 아닌 행정실 시설물 관리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 라.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검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봉인하고 여분의 문제지와 함께 평가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2. 고사 시행

-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등재에 영향을 주는 정기고사 시행에 있어서는 고사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본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 나. 정기고사 시정표상에 문답지 배부 및 유의사항 전달시간 5분을 반드시 배정한다. 특히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답안지 표기를 절대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답안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장 또는 교무실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훼손된 답안지 내용과 동일하게 새 답안지에 옮겨 기록한다.
- 다. 감독교사는 가능한 동일교사가 동일 고사실에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배정하며, 담임교사의 자기학급 시험감독 배정 및 교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급 감독 배정을 배제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감독을 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교사를 교체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사 시행전에 반드시 평가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고사감독 배정표에 반영하고 평가담당교사가 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를 득한다.
- 라. 가급적 1학급을 2개 이상 고사실로 분반하여 실시, 고사실 당 2인 감독 배치(학급당 18명 이상인 경우 필수사항), 학부모 시험 감독 보조, 복도감독 배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 마. 감독 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학급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법을 사전에 지도해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바. 시험 시작 전 담임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교실 밖으로 수거하여 전자기기 보관함에 보관하며, 담임교사나 감독교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교실 안에 둔 채로 고사에 임한 학생은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사.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학교규칙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후, 감독을 엄정하게 한다. 또한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하고 답안지의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한다.

- 아. 출제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과목 평가시간에 감독을 배정하지 않고 교무실에서 대기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한다. 만일 고사 도중 출제문제에 오류가 발견되면 고사 진행시간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오류 문제를 정정하여 고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고사 종료 후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린다.
- 자. 감독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응시현황(재적인원, 응시인원, 결시자수, 결시자 명단 및 결시 사유 등)을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답안지 회송용 봉투)의 소정란에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평가업무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 차. 평가업무담당 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답안지를 출제자(교과담당 교사)에게 인계하여 채점하게 한다.
- 타. 가급적 고사 당일 정답을 발표하되, 서답형 문제는 채점 기준, 유사정답 및 부분 점수를 함께 공개한다.

* 중학교 3학년 2학기 지필평가는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기준일 이전까지 입력 마감한다.

3. 채점 및 답안지 처리

- 가. 정기고사 답안지의 채점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지정장소 이외로의 반출을 자제한다.
- 나. 답안지의 수기 채점 시에는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유무를 2검 확인하되 교사를 달리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라. 답안지를 전산 처리할 경우에는 서답형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2검 확인하되 교사를 달리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마. 채점 및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 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도록 하여 확인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바. 서답형 답안지 채점 시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채점 과정에서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고 채점에 적용한다.
- 사.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의 내용은 결재 후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물을 근거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담당교사는 수정 전·후의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 아.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성적처리가 끝난 지필평가 학생 답안지’와 함께 ‘문항정보표(서답형 채점기준 포함)와 고사원안’ 등을 당해 학교에 5년간(성적처리 완료 시점부터 5년) 보관한다.

제10조 (수행평가)

1. 수행평가 방법

- 가. 구성적 반응 요구형 : 논술형 문항, 도표나 그림에 제목 붙이기, 시각적 자료 만들기(개념도나 흐름도, 그래프나 표, 도안 등)
- 나. 특정 산출물 요구형 : 수필, 실험·실습, 이야기·극본, 시(poem), 포트폴리오 미술작품, 과학 프로젝트, 모형(model)구성, 비디오·오디오구성
- 다. 특정 활동 요구형 :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구두발표, 무용·동작발표, 과학실험 시연, 체육경기, 연극, 토의·토론, 음악발표
- 라. 과정 표현형 : 구두질문, 관찰, 면담, 회의, 과정(process)에 대한 기술, 생각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think aloud), 학습 일지

2. 수행평가 시행

- 가. 수행평가의 영역, 반영비율, 방법, 횟수, 세부 기준(배점), 기본점수의 부여 등은 과목별·평가 영역별 비율에 맞게 교과협의회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나.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수행평가의 대상, 시기, 내용, 처리방법, 평가 기준, 미응시자 처리기준 등)을 학교 홈페이지나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사전 안내한다.
- 다. 수행평가 계획 수립·운영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상황 안에서 흥미, 자기 효능감, 참여, 협력, 배려, 경청, 책임, 실천, 동기, 가치 등의 평가 요소를 적절하게 설정 반영될 수 있도록 구안하고,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결과만이 아닌 수행 과정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 2) 3학년 2학기 수행평가는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기준일 이전까지 입력 마감한다.
 - 3)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4)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정기고사 시간에 지필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국 시도 차원의 영어듣기 평가는 예외로 하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한다.
 - 5) 특정 기간에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적정화한다.
 - 6) 예·체능 교과는 이론, 기능, 감상, 미적체험,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역은 수업 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7) 모둠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8) 자유학기 중에는 교과별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등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9) 전출입 학생 발생 시 전출학교는 전출일까지의 수행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전입학교에서는 전출학교에 수행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라. 평가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학교 수행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수행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을 반영하되,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교과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각 과목별 평가규정에 명시한다.
- 사. 신체장애(지체장애 및 감각장애(시각, 청각))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 성적처리 방법은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기본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

$$\text{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기본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기본점수 제외)}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2. 기본점수가 없는 영역의 경우

$$\text{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국어와 외국어의 말하기·듣기 평가도 이에 준하여 적용

- 아.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1회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 자.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¹⁾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차. 수행평가 결과물(미술작품 등)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당해 학년도 말까지 보관하였다가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 (인정점 부여)

1.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감염병, 병원입원 등에 의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5'항 인정점 부여 및 기준점수산출 방법을 따르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학기 내에 지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인정점 반영비율과 반영기준은 '5'항 인정점 부여 및 기준점수 산출 방법을 따르되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학기 도중에 전입한 학생은 원적교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전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전입 이전의 성적으로 반영하되

1)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 학생들의 이의신청·점수·처리·확인과정(학생의 사인 또는 날인)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그 외 인정점을 부여해야 할 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4. 유예, 면제, 유급 등의 사유가 끝나 재취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취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5. 인정점 부여 및 기준점수 산출 방법

-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아래‘다’항과‘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 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마.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평균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 1) $68.0 : 65 = 62.3$: 인정기준점수
- 2) 인정기준점수 = $(65 \times 62.3) / 68 = 59.55$
- 3) 인정기준점수 $\times 0.8$ (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 4) 최종 인정점 = 47.64

바. 인정비율 부여 방법

1)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 단위로 적용)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나)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 라)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중의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바)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의 결석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2)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다) 고사기간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

4)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나) 부정행위 혐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5) 고사기간 및 성적이의신청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성적이의신청기간에 재시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학업성적 결과 처리)

-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수강자수)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자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 작성 '예시'>

- | |
|---|
| ○ 국어과에서 지필평가 성적을 60%, 수행평가를 40% 반영하기로 하고, |
| ○ 지필평가는 학기당 2회로 하여 각각 30% 반영하고, 수행평가 영역을 '말하기', '듣기' 각각 10%, '쓰기' 20% 반영하기로 정하였을 경우, 성적 산출 일람표를 작성한 '예시'임 |

2023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 일람표

제1학년 ()반

교과담당교사()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 평가 (60%)			수행 평가 (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1차 (30%)	2차 (30%)		말하기 (10%)	듣기 (10%)	쓰기 (20%)			
평가영역 (반영비율) 번호, 성명									
1 김*동	28.50	29.40		8.80	9.60	18.80	95.1	95	A(452)
2 나*주	25.50	19.20		6.00	8.00	12.00	70.7	71	C(452)
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2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13.00	43.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16.35	82.07		
학급 평균	21.24	24.43		8.50	7.52	16.26	77.95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10.1	

- ‘김*동’의 지필평가 1차 환산점수 $28.50(30 \times 95/100 = 28.50)$ 는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때이며, 수행평가 말하기 환산점수 $8.80(10 \times 44/50 = 8.80)$ 는 50점 만점에서 44점을 받았을 때임.
- 수강자 최고점, 수강자 최저점, 수강자 평균, 학급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비율이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cdots$ 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최종 시험일(2차 고사)이다.

3.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4.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자유학기**에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해당 과목의 평가 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수강자 수를 달리할 수 있다.
5.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본 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6.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 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학력 인정과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에 의한다.
 - 나. 조기 진급자의 2학년, 조기 졸업자의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란은 공란으로 두되,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인정 평가 결과만 각각 2, 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입한다.
7.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유학, 면제, 유예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8. 복학 및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가. 복학 및 재취학, 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 나. 복학 및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다. 복학 및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마.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93호)’ 제4조 제5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교과학습발달상황, 인적·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는 정리하여 전입학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 ※ 전입 학생의 이전 학년도 자료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한다. 다만, 전출교는 학

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다.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 학생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1)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둔다.
※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 2) 다만,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 과목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되, 동일(유사) 과목 인정 및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함.
 - 나.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 다. 재취학, 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10. 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가.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 1)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지침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2) 지체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 3)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인 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 나.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1.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이수 처리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제3조의2에 따라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12.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 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2) 출결

-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9](출결상황 관리 등) 및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3) 성적

- 가) 성적처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및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나) 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 학생의 성적처리(별지9 참조)

1) 학적: 본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

- 가) 출결은 본교의 담임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의 출결 확인서에 따른다.
- 나) 해당월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본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출결 처리함
-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93호)」 [별표8](출결상황 관리 등)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3) 성적

- 가) 성적은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나)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평가 당일 본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본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4) 기타

- 가) 각종 비교과 영역: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 나) 교육정보 시스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다.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성적 처리(별지9 참고)**

1)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

2) 학적

가) 재학생의 소년원학교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를 참조해 학적 등을 관리한다.

나)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 다)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라)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마) 위 라)항의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3) 출결

- 가) 소년보호기관별 출석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 나)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는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 가능함)'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 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를 참조해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 4) 성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6)의 (마)', '6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 '가~마'항 이외의 사항은 '[별지19]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 학생 처리' 참고

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성적처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원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으로 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함.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 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 ('학대 피해학생 등 교학습 지원 방안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40('21.10.29.)참조).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원적교(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 성적)에 반영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원적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 및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원적교의 평가에 응시해야함)

- 2) 학생과 보호자, 위탁교육기관에 지필 및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절차(고사기간, 평가방법, 응시방법 등)를 미리 안내하여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과목별 수행평가 미응시(또는 미참여)에 대한 성적 처리(기본점수 부여 등)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 4) 원적교에서 지필고사 기간 및 응시를 안내를 했음에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제4장 출결 상황 관리

제13조 학생 출결 상황 관리는 「전주온빛중학교 학생 출결상황 관리규정」[별지4]에 따른다.

제5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제14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관리)

1.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시행한 평가에 따라‘교과’,‘과목’,‘성취도(수강자수)’,‘원점수/과목 평균(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교과’,‘과목’,‘성취도’를 입력한다.
2. ‘비고’란에는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한다. 입력 대상 범위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5.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는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입력한다.
6.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교양 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되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여부는‘P’로 처리한다.
7.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교과’,‘과목’,‘원점수/과목평균’,‘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8.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자유학기 전출·입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처리는 ‘자유학기 활동상황’의 「자유학기 전출·입 시 처리 요령」의 내용을 준수함.

9.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항 목	내 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생활기록부 예시>

7. 교과학습발달상황(일부발췌)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도덕	도덕	B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체육·음악·미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성취도	성취도	성취도	

과 목 특기사항

8. 자유학기활동상황

학년	학기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	⋮	⋮

제15조 (독서활동상황 관리)

-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16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관리)

-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한다.

2.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3.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누가 기록 방법(기재·관리 방법 포함)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취합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4.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5. ‘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능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6. ‘1’항의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7. ‘1’항에 따른 자율활동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8. 2012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고, 해당 시간은 담당교사가 ‘동아리활동’란에 활동 내용과 시간을 누가 기록한다.
9. 학생이 유예·면제할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누가기록과 이수시간·특기사항 등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한다.
10.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누가기록은 일괄기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제17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리)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2.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 방법(기재·관리 방법 포함)은 NEIS에 작성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은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6.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 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제18조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1.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4단 결재)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 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4.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을 제공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 가.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 나.‘인적·학적사항’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다. 제18조 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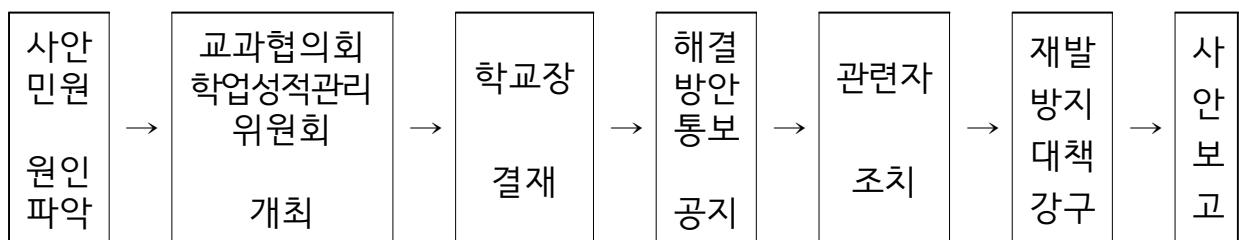
1. 본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학년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 방안을 참고하여 교과협의회의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본 학업성적관리규정은 2023. 03. 02.부터 시행한다.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구분	절차별 업무처리
학업성적 관리규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점 부여 관련 규정 확인 ○ 인정 사유 및 인정점 비율 규정 제정 확인 ○ 제출시기 및 필요 증빙자료 확인 : 결석계, 담임의견서, 공문, 의사의 진단서(의견서), 진술서, 사망 확인서 등의 서류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실시 상황표 또는 결석계 작성 및 제출 ○ 인정점 부여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서류 제출 기한 확인
인정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증빙서류 검토 확인 - 인정점 부여(공결, 경조사, 생리결, 질병결, 기타결, 미인정결, 부정행위 등) ○ 인정점 대상자 관련 제출 자료 학교장 결재 ○ 나이스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입력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일반결시}-{기준점수(과목)}-{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로 설정
학기말 성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산출 대상(고사/영역) 관리 (※ 반드시 '기준고사/영역' 설정 시 1차고사→2차고사 교차설정) ○ 성적산출 학생 관리 ○ 나이스 인정점 산출 대상자 : 인정점 부여 ○ 학기말 성적 산출 (과목별) ○ 인정점 산출 대상자 자료와 증빙자료 합침 보관 (감사시 확인 자료임)

평가 관련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1.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 사안(시험지 유출 등)일 경우 사안 인지 후 즉시 지역교육청에 유선 보고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대책 결정

2. 절차준수 목적

- 가. 사안(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
- 나. 학교 학업성적관리 방안체계 재정비 및 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 제고
- 다. 사안(민원)의 재발 방지를 통한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3. 사안(민원)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 가. 사안(민원)의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
- 나. 사안(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즉시 소집
 - 관련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공정성·정확성·투명성·신뢰성에 바탕한 해결방안 모색
 - 추가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방안 도출
- 다. 도출된 해결방안에 대한 학교장 결재
- 라. 민원인에게 해결방안 안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유선,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안내
- 마. 관련자 조치
 - 사안에 따라 경위서 징구 및 주의·경고·징계 등 조치
 - 사립학교의 경우 관련자를 재단에서 징계
- 바.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사안(민원)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 사안보고: 사안보고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평가담당 장학사에게 보고

학업성적 평가 및 보안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평가 기반 구축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및 연수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의 정확성·공정성 확보	관리자, 평가담당
	연간평가계획 수립 (수행평가 포함)	고사일시, 과목, 횟수, 반영비율, 평가영역, 평가방법, 채점기준 등 포함(반드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계획 수립)	전교사
	보안관리 계획수립	평가 단계별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보안 책임자(평가관리실, 인쇄실 등) 지정	관리자 행정실장 평가담당 연구부장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 회심의 및 결재	연간평가계획 등 심의 및 학교장 결재	평가담당
	연간평가계획 흥보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포함)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 사전 안내(학생, 학부모)	
	평가연수 실시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체연수 강화	전교사
출제	성적처리 선행작업	NEIS 입력사항 선행처리	교과담당
	학생 대상 안내	고사 시간표, 과목별 시험 범위,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인정점 및 동점자 처리 규정, 자각생 및 결시자 처리규정, 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 고사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특히 수행평가는 방법, 일시, 장소, 배점, 결시자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	담임 교과담당
	출제 시 유의사항	정기고사 진행 전과정에 대한 유의사항, 단계별 보안관리, 학생평가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 부정행위예방 관련 등 연수	평가담당
		출제관련 교과협의회 실시 - 평가범위, 출제유형, 문항 수(공동출제시 반드시 출제문항 공동검토)	교과담당
		공동 출제·검토(교사 1인 출제 경우 - 교과부장 검토)	교과담당
	학생출입 통제구역 지정 및 흥보	지난 년도(학기) 문항 재출제, 출판사 제공 교사용 교재(CD) 및 참고서 전재 여부 등 부적정 출제 사례 확인	교과담당 결재권자
		배점표시, 동점자 양산 방지, 평가문항 수 증대, 배점 다양화, 역 배점 지양 등 평가관리 공정성 확보	교과담당
		출제원안 서식 통일(학교, 출제자, 쪽수, 문항수, 배점 등)	평가담당
		출제원안 파일은 암호 넣어 보관(이동식 저장매체 이용), 평가 관련 자료 네트워크 이용 전송 금지 확인용 원안 및 파일 분쇄 ※출제 관련 문제지, 자료 등 교외 반출 금지	교과담당
	학생출입 통제구역 지정 및 흥보	서답서술형 채점 기준 작성(부분점수, 유사정답 포함) 파일 암호 넣어 보관	평가담당
		인쇄실, 교무실, 평가관리실 등(분실 및 도난 유의) (원안출제 시작부터 고사종료까지)	평가담당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출제	평가문항 출제 및 고사원안 제출	NEIS를 통한 문항정보표 작성(성취기준, 동점자 최소화 고려 배점 부여, 성취내용 기재 등 표시) 계열 및 과목코드, 총점 확인	교감 교과담임 평가담당 평가부장
		결재 선에 따른 검토 및 결재(부모 및 친인척 배제) 원안 보관 및 보안 관리 철저	
	분할점수 산출	해당 교과 단위학교 분할점수 산출, 결재 및 학생 공지 (1차고사, 2차고사, 수행평가)	교과담임
인쇄 및 보관	인쇄 및 보관 (보안 관리)	인쇄 담당자 보안 교육, 원안 수령 당일 인쇄 원칙 (인쇄한 문제지, 원안, 퍼지 보관 철저) ※당일 인쇄가 어려울 경우 평가 원안 평가담당에게 인계	교감, 행정실장 연구부장 인쇄 담당자 교과담임 평가담당
		인쇄 상태 확인 및 수정, 문제지 매수 확인, 답안지 준비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	
		인쇄실 및 평가관리실 보안관리 철저(담당자 지정, 이중잠금장치, 보안경비시스템 운영 등) 문제지 보관장 이중잠금장치 설치	
시행	고사 관리 유의사항	고사 관리 유의사항 연수(교사, 학생 대상 실시) (학부모 감독시 위촉장 수여 및 연수 실시)	평가담당
		학급별 응시 현황 및 고사 시간표 게시(칠판)	학급담임
		OMR 답안지 작성 및 교체 시 유의사항 지도	담임/감독
		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 안내 및 지도	담임/감독
		부정행위 사전 예방 철저	담임/감독
		실제 고사 시간 확보(준비령 시행, 문답지 배부시간 5분 확보)	담당/감독
	고사 감독 배정	지각생 처리 기준 준수	감독
		결시생 답안 카드 작성	
		부정행위자 발생 시 처리 규정 준수	
		답안지 교체 가능 시점 기준 준수	
		회수 답안지 매수 확인	
		답안 봉투 및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 동일한 날인	
		답안지 봉투의 기재 사항 확인	
		교환·폐기·여분 답지 등 회수	
		평가 당일 발표(해당시간 출제교사는 시험시간 중 대기)	평가담당
		담임을 맡은 학급, 교사의 자녀·친인척 등이 속한 학급 시험 감독 배치 금지	평가담당
		감독교사 임의 교체 금지(사전 결재 후 교체)	감독
		2인 감독, 학부모 보조감독, 복도감독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고사감독 배정	평가담당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평 가 후	고사정답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간, 방법 등 결정	평가담당
	답안 채점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 확인	교과담당
		문항별 배점, 채점기준 등에 따라 채점	교과담당
		결시생·전입생·특기생 등 인정점 부여	교과/담당
		답안지 봉투 서명 확인(감독, 채점, 1검, 2검)	교과담당
	정답 없음, 정답 수정, 유사답안 추가, 부분점수 추가 등의 경우 발생시 절차 준수(교과협의회→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수정사항 공지)	교과담당	
		평가담당	
	이의신청 기회 부여(절차에 따라 처리)	교과담당	
		교과담당	
	성적 최종 확인	학생 개인별 답안지와 채점표 직접 확인 후 날인	교과담당
	NEIS 성적 마감	학생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성적마감 처리	교과담당
	성적처리	모든 교과의 성적마감 후 성적처리	평가담당
	성적표 출력·발송	우편으로 성적표 발송 후 학부모에게 SMS 문자 안내	학급담당
	답안지 및 성적확인 자료 보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평가담당
	교과별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동일교과 학급별 편차, 문항별 오답율 분석 등을 통한 수업 방법 개선(교과협의회 후 교과협의록 작성)	교과담당
	시험문항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개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평가담당

전주온빛중학교 학생 출결상황 관리규정

1

관리 근거

- 가.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나. 2023 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책자
- 다. 2023 학년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2

학생 출결상황 관리 절차

- 가.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하여 관련 규정 마련
- 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다. 학교장 승인
- 라.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명시
- 마. 전체 교직원, 학부모, 학생에 대한 안내
- 바. 변경된 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에 대한 계도 및 적응기간 운영
- 사. 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 적용(모든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게 적용)

3

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

가. 수업일수

-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나) 학적변동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다)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출석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 나. 결석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출석인정결석(출석으로 처리함.)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자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 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중등 교육법 제 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5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경우

-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정치 활동 관련 출결·평가·기록 기준

구분	의정활동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정당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의 정당활동
출결 처리	출석인정 결석 ※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기타 결석
학생부 기록	기재 대상 아님 ※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기타 결석의 사유로 '교외활동(0일)'로 입력	
결석 시 성적처리	출석인정 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타 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12) 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위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
 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한다.

(나) 질병 결석

-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
 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을 승인을 받은 경우

- *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 수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에 해당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라)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 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가) 등교시각(정상수업 시작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하교시각(종례 종료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라.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가) 하교시각(종례 종료시각)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정상수업 시작시각(08:50))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마. 결과 : 수업 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가)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나) 수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다)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시간 **5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라) 질병, 기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마) 출석인정, 질병, 기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으로 처리한다.

바. 유의 사항

(가) '특기사항'란에는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1) 장기결석 : **연속 10일 이상** 결석할 경우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 기타결석 : 결석할 경우 사유를 입력함.
(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1) 지각·조퇴·결과가 5회 이상 반복될 경우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중복된 경우에는 미인정, 질병, 기타의 사유 순으로 처리하되,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항은 수업결손이 많은 것을 1회로 처리한다.
(마)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바)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4

학생 출결상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 NEIS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사유'란 :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보조부로, 결석·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입력한다. 이곳은 반드시 기재하여 민원에 대비한다.
예) 교외체험학습, 감기, 태만, 늦잠, 피의자 조사, ○○계 학원수강 등

5

학생 출결상황 관리 내용에 대한 안내

가. 안내 대상 : 전 교원, 학부모, 학생

나. 안내시기 및 기간 : 학업성적관리규정 학교장 결재 후부터 최대 1주 정도 안내.

다. 안내 방법 및 내용

- 1) 학교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학교내 게시판 등을 이용
- 2) 학생 출결상황 관리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라. 학생 출결상황 관리 적용

- 1) 학생 출결상황 관리 안내 기간 종료 후 바로 적용
- 2) **모든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일관되게 적용**
- 3) 만일 마련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고, 그 내용은 규정에 추가
- 4) 출결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

[별지 5]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

구분	내 용
부정 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흘려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워(기름종이 등)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부정 행위 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 ✓ 책상은 서랍이 교탁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음 ✓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 ✓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 ✓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 ✓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계에서 철저히 관리 ✓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보완책 강구(서명 중 부정행위 발생) ✓ 질문을 일체 금하고 필요한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기다리게 하며 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에 유의 등
부정 행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도위원회 회부 ✓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

[별지 6]

시기별 학업성적관리 업무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 ○ 교과별 평가계획 수립(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방향과 방침, 평가의 종류, 방법, 시기, 유의사항 등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채점기준, 반영비율, 실시 기간, 결시자 인정점 부여기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기초 학력 더딤 학생 지도방안 등 ‣ 수행평가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실시 기간) ‣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교과별 분할점수 산출방법 ‣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 관련 평가 방법 및 기준 수립 ○ 지필평가 없이 이수/미이수 처리하는 교양교과도 교과운영에 따른 평가 계획 수립 ○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도교육청의 '학업 성적관리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개정 ‣ 평가단계별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명시 ‣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별 성적표기 방식과 성취수준 설정 방법 명시 ○ 학업성적관리규정, 교과별 평가규정, 연간 평가 계획 등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평가부서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04/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평가 계획 공지(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발송)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전교직원 대상 연수 ○ 교과협의회(1/2학기 1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 1/2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 1/2학기 1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보안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 1/2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 홈페이지) ○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공동출제) ○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결재단계) ○ 확정된 고사원안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 담당자 지정)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0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기 1차고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적법하게 조치 ○ 채점 결과의 확인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 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 ‣ 채점 결과의 공개 및 확인 절차 진행 ‣ 이의신청 기간 운영을 통한 채점 결과 확정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 1/2학기 1차고사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별 오답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분석 ‣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평가부서 담당교과 담당교과
0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협의회(1/2학기 2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 1/2학기 2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 1/2학기 2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보안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 1/2학기 2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홈페이지) ○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공동출제) ○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결재단계) ○ 확정된 고사원안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담당자 지정)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0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평가 영역별 채점 결과에 대한 학생본인 확인 ‣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 및 처리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1/2학기 2차고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 채점 결과의 확인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 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 ‣ 채점 결과의 공개 및 확인 절차 진행 ‣ 이의신청 기간 운영을 통한 채점 결과 확정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 1/2학기 2차고사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별 오답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분석 ‣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 학기말 성적 산출 및 평가 결과 공개 ○ 학기말 성적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 정기고사 결과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p>담당교과</p> <p>평가부서</p> <p>담당교과</p> <p>담당교과</p> <p>담당교과</p> <p>담당교과</p> <p>담당교과</p>

[별지 7]

정기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

2023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종합안내 (예시)

전주온빛중학교

I 2023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성적처리 일정 및 고사당일 시정

구 분	일 정	담 당 자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4.12., 4.26.(2회 실시)	평가담당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4월 20일(목)	학년별 평가담당
고사원안 검토, 시험지 인쇄	4.20.(목)~4. 26.(수)	학년별 평가담당
학년별 시험지 포장	4.27.(목)~4. 28.(금)	교과담당
1차고사 실시	5월 2일(화) ~ 5월 4일(목)	평가담당
답안지 채점 및 성적 학생 확인	5월 8일(월) ~ 5월 16일(화)	교과담당 성적처리담당
성적 이의신청기간(3일간) ※반드시 학생 본인 확인 후 날인을 요함	5월 12일(금) ~ 5월 16일(화)	교과담당
교과 담당자 성적마감 성적단표 및 OMR 카드 제출	5월 18일(목)	교과담당
성적처리계 성적산출	5월 22일(월)	학년별 평가담당
성적표 발송	5월 23일(화)	학급담임

단, 기간은 매 정기고사 실시 전 내부 결재로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실시한다.

구 분		시 작	끝	비 고
조 회	사전교육	08:40	08:45	담임교사가 입장하여 평가시 유의사항 전달 및 출결사항 기재
1 교시	문답지 배부	08:50	08:55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08:55	09:4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2 교시	문답지 배부	09:50	09:55	
	평가 진행	09:55	10:40	
3 교시	문답지 배부	10:50	10:55	
	평가 진행	10:55	11:40	
4 교시	문답지 배부	11:50	11:55	
	평가 진행	11:55	12:40	

II | 2023학년도 ○학기 ○차고사 일자별 시간표

일자	○ 월	○ 일 (○요일)	○ 월	○ 일 (○요일)	○ 월	○ 일 (○요일)		
학년/교시	1	2	3	4	1	2	3	4
2학년								
3학년								

III | 정기고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시 유의사항

1. 시험문제 출제 시 유의 사항

- 가. 2023 교과별 평가계획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출제하고 평가
- 나. 학년별 동일과목 교과협의회를 통한 공동출제 성적차를 최소화(출제문제 학년별로 필히 공동 검토)
- 다. 고사 관련 자료(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에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 네트워크 공유금지, 메신저 전달 금지, 반드시 개인용 이동저장매체를 사용
- 라. 출제 완료 후, 수업 교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특정 학생에게 출제 문제를 암시하거나 정리 명목으로 출제 문제 암시하는 의혹 시비 철저 차단
- 마. 나이도에 따른 다양한 배점으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 최소화를 위한 소수 배점(선택형 50% 이상 권장). 문항마다 배점 표기하기 (마지막 장에 표로 제시해도 무방함)
- 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성하되, 서답형의 총 배점 비율은 지필평가의 30% 이상으로 하되, 서술형(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포함), 과학 : 20% 이상, 도덕은 10% 이상) 출제
- 사. 수학, 영어교과 등 수준별 수업내용에 따른 선택형 평가 도입 권장
- 아. 서답형, 서술형 문항의 경우 문항정보표 또는 별지에 채점기준, 부분점수 등 채점방법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
- 자. 출제 문항 중 부정적인 발문에 대하여는 진한 글씨체로 작성하고 밑줄 긋기
- 차. 시험지 원안의 꼬리말에는 전체 페이지 중 몇 번째 페이지(1/7), 과목명, 고사 실시 계열명 등을 기록함
- 카. 출제한 고사원안과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서술형) 등은 정해진 제출기한 내에 평가계에 제출
- 타. 교과담당교사는 평가담당 교사로부터 인쇄된 문제지를 배부받아 학급별로 포장하여 여분시험지와 함께 평가담당교사에게 제출 이때 문제지 보관 철저

2. 시험답안 채점 및 결과 처리 시 유의 사항

- 가. 문항정보표 정답/배점 입력
 - 1) 채점을 위한 정답과 배점은 교무업무시스템의 다음 경로에 교과담당교사가 직접 입력
 - 2) [성적]-[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고사', '학년/학과', '과목' 선택 → 조회 → 선택형-서답형 탭 → 문항별 '배점'과 '답안'을 입력하고 저장
- 나. 채점
 - 1) 평가 후 성적처리 담당교사가 카드리딩-결과 파일 업로드하면 교과담당교

사가 나이스상에서 채점

- 2) [성적]-[지필평가]-[채점]에서 ‘고사’, ‘학년’, ‘과목’ 선택 후 조회→특정 반 선택 후 검증하여 이상이 없으면 → ‘학생답안선택형’을 선택 → 채점채점 시 ‘학생 답안선택형’란의 ‘학생답안서답형 점수’를 선택함(기본값)
 - 3) OMR카드에 서답형 답을 마킹하지 않고 [성적]-[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서답형 점수를 입력했을 경우는 ‘성적관리 서답형’을 선택하여 채점
- 다. 교과담당교사가 학생들의 점수와 결시명칭, 학적변동 등을 확인하고, 학생답안이 없는 결시생과 학적변동 학생은 ‘결시명칭’ 또는 ‘고사별 학적변동’ 란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저장
- 라. 학생들의 서답형 점수를 OMR 카드에 마킹하여 업로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지필평가]-[성적 관리]를 통해 직접 입력
- 마. 학생들의 고사성적 확인을 위해 정오표를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함.
- [성적]-[지필평가조회]-[교과별학생답정오표조회]에서 ‘고사’, ‘학년’, ‘반’→ 조회 → 일괄출력하여 학생 개인에게 배부하여 확인

바. 학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 접수
- 2) 교과담당교사는 [성적]-[지필평가]-[학생답관리]에서 ‘고사’, ‘학년’, ‘과목’, ‘반’선택 후 조회 → 학생 본인의 OMR 카드를 확인
- 3) 학생 답안을 수정해야 할 경우 OMR카드를 다시 읽어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성적파일 올리기] 한 후 해당 학급에 대하여 [성적]-[지필평가]-[채점]에서 재채점을 실시함. [성적]-[지필평가]-[학생답관리]에서 선다형 답은 수정할 수 없음(잠금/해제 후 서답형점수는 수정 가능)

사. 성적일람표 출력 및 학생 확인

- 1)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 해결 또는 기간 종료 후 실시
- 2)[성적]-[지필평가조회]-[교과목별일람표조회-반별]에서 ‘고사’, ‘학년’, ‘과목’, ‘반’을 선택 → 조회 → 출력
- 3) 성적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확인 후 완료된 성적 일람표는 교과담당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담당 교사에게 제출

아. 서답형 답안 채점시 유의사항

- 1) 채점은 해당교과의 출제교사 공동채점을 원칙으로 함
- 2) 채점은 학교 내에서 하며 학교 외부로 답안지 반출 금지
- 3) 정답은 O, 오답은 X로 답안 내용 위에 정색 펜을 이용하여 표기
- 4) 정정 사항은 두 줄을 그어 정정한 후 날인
- 5) 카드 봉투 및 서술형 논술형 답안지 표지에 초검, 재검, 삼검 교사는 서명 및 날인
- 6) 서답형, 서술형 답안 채점 시 각 문항마다 부분 점수를 반드시 기록
- 7) 서답형, 서술형 점수를 OMR카드에 이기 시 번호, 이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마킹
- 8) 채점 도중 발생한 추가 유사정답, 부분점수는 반드시 교과협의회를 거쳐 추가 결재
- 9)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홍보하고, 성적의 정정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자. 성적 마감

- 1) 교과담당교사가 해당고사 성적처리 절차를 마감함
- 2) [성적]-[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고사’, ‘학년’, ‘과목’, 을 선택 → 조회→

마감함

IV | 학급 담임교사의 학급지도 유의사항

1. 출제 및 고사 기간 중 교무실에 학생 출입 금지 지도
2. 학급별 책상 배열 : 5(열)
3. 고사 당일 칠판에 재적 및 응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
[예 : 재적 28명, 응시 27명, 결시 1101 홍길동(질병)]
※ 출결사항에 ‘사고결’은 없으며, ‘미인정결’로 표시
4. 고사 당일 책상은 서랍이 교탁 쪽을 향하도록 돌려 놓고, 책상 속을 비우고 가방은 지퍼를 채워서 교실 앞쪽에 가지런히 정리 정돈 지도
5. 고사기간 중 휴대폰 및 통신가능한 모든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 소지 불가 사전지도, 책상 위 낙서 금지 등 부정행위 처리사항 지도. 부정행위 적발 시 선도처분 및 0점 처리
6. 훈화를 통하여 올바른 수험태도 및 OMR 카드 작성 요령 지도 답안용 카드에 학번, 성명, 과목명, 계열코드, 과목코드 등을 정확히 기록 할 것
7.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하며, 답안용 카드의 모든 글씨는 검정색 또는 빨간색펜으로 작성함. 서술형 및 서답형 답안의 수정 시 두 줄 긋기
※ OMR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 모두 연필 또는 샤프펜 절대 사용 금지
8. 수정테이프 사용 방법
 - 가. 답안지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은 학생 본인이 선택
 - 나. 고사시간 시작부터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다. 선택형에 한하여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서답형 수정 시 두 줄 긋기)
 - 라. 감독교사가 제공하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
 - 마. 학생이 필요시 손들면 교사가 수정테이프를 제공하고 학생 본인이 수정
 - 바. 수정한 곳 바로 위에 감독교사의 콩도장 날인(별도 기록 없음)
 - 사. 평가담당자는 수정테이프, 스탬프 등 시험에 필요한 물품을 반별로 배부하고 담임교사는 시험기간 중 교탁 위에 비치(고사마다 배부, 수거)

V | 시험 감독교사 유의사항

1. 시험 감독 배정

자녀 및 친·인척 관계, 담임교사는 해당 학급의 감독을 금지하고, 발표된 감독 시간 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감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

2. 시험 시작 전

- 가. 소지품 정리 정돈 및 휴대폰 등 통신기기 수합 (담임교사 또는 감독 교사)
- 나.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은 무릎 위에 놓고 대기
- 다. 정감독 교사는 답안지 봉투에 수검학생 현황을 기록하고, 부감독 교사와 함께 문 제지와 답안지 배부

- 라.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하며, 답안용 카드의 서답형·서술형 답안의 모든 글씨는 검정색 또는 빨간색펜으로 작성함 (수정테이프 사용 방법) 지도

3. 시험 진행 중

- 가. OMR 카드는 학생 수에 맞게 배부하고, 여분은 시험 종료 후 평가계에 제출
- 나. 문제지 배부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 인쇄 상태와 전체 쪽수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는 시험지와 답안지는 즉시 교체
- 다. 정감독 교사는 교실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부감독 교사는 교실 뒤쪽에 위치하여 정숙한 시험장 분위기 조성
- 라. 시험 중 중간 퇴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중간에 퇴실하게 될 경우 답안지를 제출한 뒤에 허용하거나 부감독 교사가 동행
- 마. 정감독 교사는 답안지에 학년, 반, 번호, 이름, 과목코드를 바르게 기재하고 표기 했는지 확인하고 감독 확인란에 날인 또는 자필로 확인
- 바. 답안지 교체 허용 시간 안내 (예 : 시험 종료 5분전까지만 답안지 교체를 허용합니다)
- 사. OMR카드 회수용 봉투 및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자필로 성명 기재
- 아. 결시자를 확인하고 결시자가 있는 경우 결시자 카드를 만들어 수거용 봉투에 삽입

4. 시험 종료 후

- 가.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OMR카드 답안지는 책상 위 오른쪽, 기타 답안지는 왼쪽에, 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고 눈을 감게 한 후 맨뒤에 앉은 학생으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답안지를 회수하도록 함
- 나. OMR카드 등 모든 답안지는 번호 순서대로 수합하고 매수를 반드시 확인함
- 다. OMR카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카드 교체 시 뒷면의 이기 여부도 확인
- 라. OMR카드의 답란에 적색 플러스펜으로 표시했더라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오답 처리(담임과 감독교사는 수시로 확인)
- 마. 고사 중 교환하여 폐기할 OMR카드는 그 자리에서 찢지 말고 답안지에 x 표시 후 본부에 제출한다.
- 바. 수거한 답안지 매수와 확인날인 여부를 확인한 후 봉투에 담아 즉시 평가계에 제출

5. 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성인권안전부장 및 평가계에 제출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처리
- 휴대폰 및 통신가능한 모든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담임교사나 감독교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교실 안에 두 차례 고사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VI**2023학년도 ○학기 정기고사 과목별 코드 안내**

과목 코드	과목명	과목 코드	과목명	과목 코드	과목명	과목 코드	과목명
01	국어	05	과학	09	음악		
02	도덕	06	기술가정	10	영어		
03	역사	07	체육	11	생활·중국어		
04	수학	08	미술	12	한문		

VII**2023학년도 정기고사 답안지 채점-1검-2검 담당교사 안내**

채점교사는 담당학급교사가 채점하고 1검하며, 2검은 동일학년 담당교사 및 유사과 목의 담당교사가 서로 상호하여 실시한다.

VIII**2023학년도 정기고사 원안 양식**

2019학년도 학기 차고사 월 일 [] 교시					결 재	계	부장	교감
과 학년								전과
학년 반 번 성명 []					출제교사 :	(서명),	(서명)	
★ 선택형 문제(1번 ~ 5번)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올바른 답을 글자 OMR카드에 점칠 컴퓨터용 쌤安康으로 바르게 표기하시오.					★ 서술형 문제(6) ~ (56) 다음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OMR카드 서술형 판에 바르게 쓰시오.			
1.	①	②	③	④	⑤	(3점)	[서1]	(3점)
2.	①	②	③	④	⑤	(4점)	[서2]	
							[서3]	
							[서4]	(서술형 6점)

IX**2023학년도 정기고사 문항정보표 나이스 출력 제출방법**

- 나이스-[성적]-[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학년도', '학기', '고사', '계열/학년/학과', '과목'에서 본인의 과목을 조회
- '선택형', '서술형'만점 입력, '행동영역'등록, '성취기준추가'박스에 체크
- '내용영역', '성취기준', '난이도', '정답'입력 후 저장
- '고사 실시일자'입력 후 출력하여 원안과 함께 제출

X | 2023학년도 문항 채점표 양식

2019학년도 제 학기 차 지필고사 ()과 ()학년 문항정보표									
전주온빛중학교									
출제교사	실시일자	소요시간	배점	결재	계	부장	교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2019. . . 교시	45분	100점				전결	
내용영역	문항	성취기준	난이도	정답	배점	선택형	서답형	비고	
			어려움	보통	쉬움				
			1			○	5.0		○
			2			○	5.0		○
			3			○	4.0		○
4			○	4.0	○				

XI | 2023학년도 서답형/서술형 답안지 양식

[]과 서답형 문항 채점 기준 2019학년도 ()학년 ()학기 ()차 고사

문항번호	기본답안 (인정답안)	배점	채점기준 (부문점수 상세히)
서답형1			
서답형2			
서답형3			
서답형4 (서술형)			

- * 기본답안 : 답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본내용을 제시. 1개만 가능.
- * 인정답안 : 기본답안 외에 정답으로 인정·채점할 수 있는 반응 유형을 제시.
(출제자가 설정한 기본답안, 인정답안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교과지식이나 논리 체계상 정답으로 인정 가능한 답안 내용을 제시)
- * 분할점수 부여기준(채점기준에 명시)
 - 기본답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요소가 복수 이상인 경우
 - 특정 대상의 구성요소를 2개 이상 제시하라고 요구한 경우
 - 답안 작성 내용이 단계, 혹은 과정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별지 8]

재시험 처리

1.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

- 가. 정답이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 나. 내·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문항에 대한 타당도·신뢰도가 떨어진 경우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별도 공문**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재시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2. 재시험 절차

- 가. 출제오류 내용 분석 및 교과협의회 개최
- 나. 관계자 사유서 징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대책 수립 및 학교장 결재
- 라. 출제오류 및 재시험 일정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마. 재시험 실시, 채점, 검토, 성적처리
- 바. 재발방지를 위한 전교원 대상 연수 실시 및 사안 보고

3. 관련서류 보완

- 가. 재시험 문항에 대한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추가 작성 · 제출
 - 나. 재시험 일정 마련
 - 다. 재시험에 따른 성적처리 방법
- ※ 학기말 반영비율이 30%인 1차고사 선다형 10번 문항 5점 배점인 경우의 출제 오류에 대한 처리과정
- 1) 다음 작업을 먼저 수행한 후 처리
 - 가) NEIS [지필평가]-[마감관리]에서 해당 과목의 마감을 해제
 - 나) [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해당과목을 [조회]한 후 [조회]버튼 아래에 있는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내는 대화상자에서 [정답/배점]을 선택하여 삭제
 - 다) [지필/수행 선행작업]-[지필평가고사관리]에서 해당고사 해당과목의 만점과 반영 비율을 아래 계산방법과 같이 조정하여 입력
- [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1차고사] 해당 과목을 선택한 후 100점 만점으로 입력되었던 것을 해당 문항의 배점만큼 감소시켜 만점을 조정하고 출제오류에 해당하는

문항의 배점을 0점으로 수정하여 채점

- 선다형 10번 문항이 오류이고 배점이 5점이므로 기존에 선다형 만점이 50점이었다면 오류 문항에 해당되는 5점을 뺀 45점으로 수정하고 과목만점을 95점으로 수정하여 저장
- [지필/수행 선행작업]-[지필평가고사관리]에서 고사를 추가(예, 1차추가고사 등)하고 [지필/수행선행작업]-[지필평가과목관리]에서 해당과목을 추가한다. 이 때 학기말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입력

- 기존의 만점 : 변경되는 만점 = 기존의 반영비율 : 변경되는 반영비율
- $x(\text{변경되는 반영비율}) = (\text{변경되는 만점} \times \text{기존의 반영비율}) / 100$
 - 1차고사 반영비율계산
 $100:95=30:x$ $x=(95 \times 30) / 100$ $x=28.5$
 - 1차 추가고사 반영비율계산
 $100:5=30:x$ $x=(5 \times 30) / 100$ $x=1.5$
- ※ 소수 3자리 이상 발생될 경우와 결시자 인정점 부여를 위한 기준고사 영역 설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 [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1차추가고사] 해당 과목을 선택한 후 선다형 만점 및 과목만점을 5점으로 입력하여, 1번 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출제한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결재를 득한 후 재시험을 치름. 단계별로 정기고사와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에 채점
- 학기말 처리를 위해 [성적산출선행작업]-[성적산출대상고사/영역관리]에서 결시생 인정점 처리를 위한 기준고사 영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력한 후 학기말 처리
(예: 1차고사 \Rightarrow 2차고사, 1차추가고사 \Rightarrow 1차고사, 2차고사 \Rightarrow 1차고사 등과 같이 직전 또는 직후 성적을 기준으로 처리)

위탁학생, 병원학교 · 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종 류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출결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보호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수업일수는 재직학교의 수업일로 계산하여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교의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출결 을 합산하여 처리함. 평가기간 등 소속학교의 등교일은 소속교에 서 출결처리 함.
성적 (지필평가/ 수행평가)	<p><성적산출 소년보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보호기관의 성적을 인정함 (원적교 성적산 출에 포함하지 않음). 재·전·편입생의 성적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 리함. 소년보호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 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 수 내용을 입력함. 소년원학교 학기말고사 시작 이후 입교한 경우 전적학교 시험 응시 및 전적학교에서 성적처리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원적교 성적산 출에 포함함. <p><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 되는 경우 원 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미인정 결석으 로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교 평가에 응시함(소속교성적산출에 포함). 소속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 리함.
각종 비교과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보호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 함.
교육정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과정개설 소년원학교: 위탁학생 관리 - 교과교육과정미개설 소년원학교: 미인정결석 처 리 - 단8호 처분자는 원적교 수업일수 인정 소년분류심사원: 원적교 수업일수인정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원적교 수업일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

「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원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으로 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함.

※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원적교(지필·수행평가)에 미 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보호처분 7호 학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분류처우) 제3항에 따라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수용)은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기초학력 관련)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계획

1. 목적

- 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학습 생태계 구축
- 나. 학습지원대상학생 관련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 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노력
- 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와 관련한 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 제고
- 마. 참학력 중심의 멘토-멘티 협력학습 체제 구축
- 바. 단 한명의 학생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는 학생중심, 과정중심, 성장중심 수업설계

2. 기본방침

- 가. 단위학교 과목별 평가규정에 기초학력 관련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 나.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를 교환하고, 이들 학생에 대한 공동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 다. 동료학생 멘토-멘티 결연을 통하여 학습의 전과정 및 학교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라. 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신장 예산을 수립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방법

- 가. 또래학습나눔 동아리 활동 등 멘토-멘티 관계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나.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습지원대상학생 대상 자기주도학습 방법 강사초청 연수
- 다. 이웃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 1)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전문강사를 초청한 방과후 교육
 - 2)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 3) 학생의 소질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방과후 활동 활성화
 - 4) 독서논술 및 음악, 미술 등 동아리 활동과 특별활동 활성화
- 라. 멘토학생 또는 도우미 강사를 통한 정규수업 시간 도움교육
- 마. 수업참여와 흥미를 제고하고, 학업 효능감을 높이는 교수학습 개선

2023 학생평가 시행 보안관리 점검표

고사명	학기 차고사	점검일자	2023. . . (요일)		
작성자	(서명)	평가담당 부장교사	(서명)	확인자 (교감)	(서명)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O, X)	비고
출제	1. 평가 시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2.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관련 교직원을 평가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는가?		
	3. 평가 시행 전 도덕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4. 평가관련 자료(원안, 문항정보표, 서술형 채점기준표 등)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 보관하였는가?		
	5. 평가관련 자료(인쇄물, 참고자료 등)를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6. 평가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전송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7. 평가 원안 결재본을 이중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8. 평가관리실의 책임자가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교감이 아닌 경우 [비고]란에 담당자 작성		
	9. 출제기간 동안 출제장소(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인쇄	10.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및 인쇄담당자 외 인쇄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11.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인쇄실 출입 시 휴대전화 등(촬영가능 기기)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가?		
	12. 인쇄실에서는 평가지 수령 즉시 인쇄하고, 인쇄가 마감된 원안지를 즉시 담당자에게 인계하였는가?(수령 당일 인쇄 원칙)		
	13. 평가업무 담당교사의 입회하에 관련자료들을 밀봉하고 확인하였는가?		
	14. 평가지를 평가관리실의 이중잠금 보관장(또는 이중철제문)에 보관하고 있는가?		
	15. 평가관리실에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CCTV 등) 및 보안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비고란에 관련내용 작성)		
	16. 인쇄 작업 후 인쇄 원지 및 파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관련 자료를 평가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시행	17. 해당 과목 평가지를 고사 당일 평가관리실에서 반출하였는가?		
	18.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19.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였는가?		
	20. 고사본부에서는 감독 교사에게 답안지 인수 즉시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1. 시행 기간 동안 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채점	22.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3. 채점기간 중 학생 답안지를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24. 채점기간 동안 채점장소(성적처리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25. 학생의 확인이 마감된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기타 의견			

[별지 12]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

구분	내 용
부정 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 미제출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흘려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워(기름종이 등)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 주는 경우도 있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부정 행위 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 ✓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 ✓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 ✓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 ✓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계에서 철저히 관리 ✓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보완책 강구(서명 중 부정행위 발생) ✓ 질문을 일체 금하고 필요한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기다리게 하며 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에 유의 등
부정 행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도위원회 회부 ✓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